

의안번호	2208842
의 퇴 인	정희용 의원
회 답 일	2025. 7. 7.
추계번호	25B149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40억원(연평균 88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안 제4조의5)	8,000	9,000	9,000	9,000	9,000	44,000	8,800

주: 1.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주산지협의체 구성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후단 신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조의3 (농산물 수급관리방안) 신설	중앙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마련한 수급관리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3	안 제4조의4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이하 “수급안정사업”이라 함)을 추진할 수 있음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 제4조의3에 따른 수급관리방안 실행을 위한 지원 5.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계약출하 및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4	안 제4조의5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5조 (농림업관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u>다음 각 호의 사항</u>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유통 경로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 ※ 농림업관측을 위한 조사·분석 대상을 농산물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6조 (계약생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계약출하 또는 계약거래(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이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제1항) ※ 농산물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외에 계약거래 장려 추가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출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거래를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7	안 제9조(수급 불안정 시의 생산자 보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의2 (주산지협약체의 구성 등) 제1항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마늘·양파 등 2개 품목에 대해 주산지협약체의 운영 경비 지원 중 - 사업명: 발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사업¹⁾ - 지원 품목: 마늘, 양파 2개 품목 - 지원 대상 지자체: 마늘 5개소(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양파 5개소(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사업내용: 선제적 수급관리(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를 위한 주산지협약체 운영 경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국비 817백만원(2025년) ① 주산지협약체 운영 : 800백만원 10개소×160백만원×국비 50% ② 행정경비 17백만원×국비 100% [표 2] 발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 운영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head> <tbody> <tr> <td>발작물산업육성 (3032-338)</td><td></td><td></td><td></td></tr> <tr> <td>- 발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 사업</td><td>-</td><td>817</td><td>817</td></tr> </tbody>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약체 구성에 자조금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참여 규모 및 지원 내역 등을 예측할 수 없음 ※[참고자료 1] 원예농산물 수급 관련 거버넌스 운영 현황	사업명	2023	2024	2025	발작물산업육성 (3032-338)				- 발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 사업	-	817	817
사업명	2023	2024	2025												
발작물산업육성 (3032-338)															
- 발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 사업	-	817	817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4조의3 (농산물 수급관리방안) 신설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중앙주산지협의회가 주산지협의체 및 생산자단체가 마련한 수급관리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주산지협의체 및 생산자단체의 수급관리방안의 내용 및 소요비용 등을 알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수행할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알 수 없음
3	안 제4조의4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신설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주요 기능인 수급조절기능을 2026년부터 ‘수급안정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가격차 보전 기능은 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수급안정의 대상 품목 및 사업물량, 출하조절 및 계약출하물량, 가격보전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3]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참고자료 4] ^(가칭)원예농산물 수급안정사업(안) [참고자료 5]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참고
4	안 제4조의5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신설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5	안 제5조 (농림업관측)	—	• 미대상 — 개정안은 농림업관측을 위한 조사·분석 대상을 농산물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업관측 예산('25년 187억원)을 활용하여 추가재정소요 없이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농업관측사업(2025년 기준) — 36개 품목에 대한 농업관측(171억원) 및 9개 품목에 대한 소비실태조사(16억원)로 구성 · 소비실태조사 품목: 양파, 마늘, 무, 배추, 사과, 쌀, 감자, 계란, 김치(9품목) [표 3] 농업관측 품목(36개) <table><tr><th>구 분</th><th>품 목</th></tr><tr><td>채소(9개)</td><td>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당근, 양배추, 파, 버섯</td></tr><tr><td>과일(6개)</td><td>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td></tr><tr><td>과채(8개)</td><td>수박,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td></tr><tr><td>축산(6개)</td><td>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td></tr><tr><td>곡물(3개)</td><td>쌀, 콩, 감자</td></tr><tr><td>국제곡물(4개)</td><td>쌀, 밀, 옥수수, 대두</td></tr></table> 주: 연도별 농업관측 품목수: ('99) 9개 → ('01) 24개 → ('07) 28개 → ('10) 31개 → ('12) 34개 → ('13) 35개 → ('21~) 36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구 분	품 목	채소(9개)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당근, 양배추, 파, 버섯	과일(6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과채(8개)	수박,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축산(6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곡물(3개)	쌀, 콩, 감자	국제곡물(4개)	쌀, 밀, 옥수수, 대두
구 분	품 목																
채소(9개)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당근, 양배추, 파, 버섯																
과일(6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과채(8개)	수박,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축산(6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곡물(3개)	쌀, 콩, 감자																
국제곡물(4개)	쌀, 밀, 옥수수, 대두																
6	안 제6조 (계약생산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재배 소요자금 용자 지원 및 농축산물 원료매입업체에 대한 구매이행대금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는 것임 ※ 계약재배 관련 사업 — 사업내용: 수급 조절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농협,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소요자금(품대, 제비용, 운용자금)을 무이자 용자 지원 · (농업인 의무) 수급불안 발생 시 사업대상자는 출하 잔량의 30%를 지정 출하처에 출하 — 대상품목 및 계약재배 물량(평년 생산량 대비, %) · (노지채소) 9개품목, 28.6%/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겨울대파, 고랭지감자 · (과수) 4개품목, 7.6%/사과, 배, 귤, 단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과채) 5개품목, 4.9%/풋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 원예농산물 계약재배 사업비 : ('24) 3,239억원 → 25년 3,084억원 ※ [참고자료 2]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채소가격안정제 등) 관련 사업 현황 참고 [표 4] 계약재배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head> <tbody> <tr> <td>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3033-304)</td><td></td><td></td><td></td></tr> <tr> <td>－ 수급안정지원</td><td>359,924</td><td>323,932</td><td>308,407</td></tr> </tbody> </table> 주: 융자상환도래액을 제외한 실제 계약생산 지원자금 ※ 국산 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 － 사업내용 : 중소식품제조 식자재 업체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해 구매이행대금 지원 · 지원대상 :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매입하는 업체(식자재, 가공업체 등) · 보증금액: 최대 2억원/ 보증기간: 1년 이내 · 보험사: 서울보증보험 · 보험요율: (법인) 0.533%~4.973% · '24년실적: (예산) 2억 5,000만원, (지원실적) 214개사, 보험료 지원액 2억 3,000만원, 구매실적 515억원	사업명	2023	2024	2025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3033-304)				－ 수급안정지원	359,924	323,932	308,407
사업명	2023	2024	2025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3033-304)															
－ 수급안정지원	359,924	323,932	308,407												
7	안 제9조 (수급 불안정 시의 생산자 보호)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채소류 등 가점안정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의 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향후 구매 대상품목 및 수급불안 여건을 예측하기 불가하고, 구매 외의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발작물산업육성(3032-338)의 내역사업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안 제4조의5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안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으나,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도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비용에 대하여 추계함
 - (수급관리센터 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급안정사업은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각 시·도의 수급관리센터는 2026년 8개소, 2027년 이후 9개소 설치·운영 예정
 - － (9개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개소당 설치·운영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급관리센터 1개소당 소요비용은 연간 10억원 규모
 - ※ 수급안정사업 초기 단계(설치비 및 운영비) 및 본격 운영에 따른 확대 단계(운영비)에서 각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 (유사사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연간 10억원 지원중(국비 100%)²⁾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40억원으로 추계됨

2) 자조금지원(3031-325)-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22년)~('25년) 각 10억원
－ 자조금단체 설치지원, 단체 담당자 직무교육, 통합콜센터운영, 홍보 등 자조금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운영 경비(의무 18개, 임의 4개 총 22개 품목 관리)

[표 5]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급관리센터 설치 수(A, 개소)	8	9	9	9	9	—
1개소당 지원금액 (B, 백만원/개소)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원금액 (C=A×B, 백만원)	8,000	9,000	9,000	9,000	9,000	44,000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계액
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1] 원예농산물 수급관련 거버넌스 운영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전국) 의무자조금, 중앙주산지협의회, 생육관리협의체

- ① 의무자조금 :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출하액, 농수산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조금단체 설립 및 정부 승인(농수산물자조금법)

☑ (기능) 해당품목의 산업발전을 위해, 소비촉진,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교육 등 추진, 자조금법 제21조2에 따라 생산유통자율조절(경작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공동협약) 시행(위반시 과태료 부과), 거출금 부과 및 사용 권한 보유, 미이행자 농식품부 지원 배제

- ② 중앙주산지협의회 : 품목별 주산지협의회간의 정보교환 및 정부의 수급조절 과정에서의 참여를 위해 설치(농안법 제4조의2)

☑ (구성) 농식품부에서 위촉하는 사람 10명, 농식품부 공무원(유통국장), 전문가 등 20여명
☑ (기능) 정부의 수급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 (운영) 12개품목(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당근, 겨울대파, 풋고추, 딸기, 가지, 토마토)

- ③ 생육관리협의체 : 노지채소(무·배추·마늘·양파) 및 과일류(사과·배·복숭아·단감)의 안정적 생산관리를 위해 구성(법적근거 없음)

☑ (구성) 농식품부,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자조금단체 등 민·관 합동 품목별 15명내 구성
☑ (기능) 생육단계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생육 상황 점검(월 2회) 및 생육 관리(농가 기술지도 등)

□ (지역) 주산지협의회 : 주산지 지정목적(생산 및 출하 조절 등) 및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농안법 제4조의2)

☑ (구성) 시도소속 공무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전문가, 자조금단체 등 20여명
☑ (기능) 수급 동향 공유 및 대책 수립,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등
☑ (운영) 10개 광역지자체 42개 협의체 운영 ※ 현재 운영 품목 :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마늘, 양파, 무, 배추, 건고추, 대파, 감자)

[참고자료 2]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채소가격안정제 등) 관련 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계약재배 관련 사업 및 개요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수급안정지원) 노지채소·과수·과채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및 수급 안정 도모
- (발식량작물수매지원)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발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두류·맥류계약재배) 두류·맥류 재배농가 등 실수요업체의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소비기반 확대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채소가격안정지원) 노지채소류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면적조절, 출하정지, 조기출하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전, 출하장려금, 산지폐기 비용 등 지원

□ 계약재배 대상 주요 농산물 품목

- 수급안정지원: (노지채소)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감자, 당근, 양배추 / (과수) 사과, 배, 감귤, 단감 / (과채) 오이, 호박, 풋고추, 가지, 토마토
- 발식량작물수매지원, 두류·맥류계약재배 : 콩, 팥, 녹두, 밀 등
- 채소가격안정지원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감자

□ 하한가격 결정 절차 및 주요 농산물별 하한가격 예시

○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9호)

-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
-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함

□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 관련 예산 현황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 관련 예산 현황: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산지유통 종합자금 (융자) (3033-304)	수급안정지 원	노지채소(9개 품목), 과수(4개 품목), 과채 (5개 품목)의 계약재 배 소요자금 지원	302,072	340,506	359,924	323,932	308,407
	발식량작물 수매지원	발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	9,349	8,930	8,484	8,484	9,200
	두류·맥류 계약재배	두류·맥류 계약재배 농가 등 대상 소요자 금 지원	44,948	39,806	40,912	23,666	25,549
	소계		356,369	389,242	409,320	356,082	343,156
농산물생산 유통조절지 원 (3031-326)	채소가격안 정지원	노지채소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수급 의무를 부여하는 대 신 가격차액 보전, 출 하장려금, 산지폐기 비용 등 지원	34,063	40,443	55,190	55,190	20,716
	유통협약· 명령지원	유통협약·명령 이행 에 수반되는 필수적 인 경비 및 부대 비용 지원	—	445	445	400	400
	소계		34,063	40,888	55,635	55,590	21,1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3]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입경과) 계약재배만으로는 농가의 소득안정 및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이 어려워 노지채소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16년부터 도입

(단위: 억원)

구분	'16년(시범)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규 대상품목	배추 (여름, 겨울), 무(겨울)	배추·무 (全年형), 양파, 마늘	고추, 대파	—	감자	—	—	—	—	—
예산(억원)	35	100	168	186	241	340	451	552	552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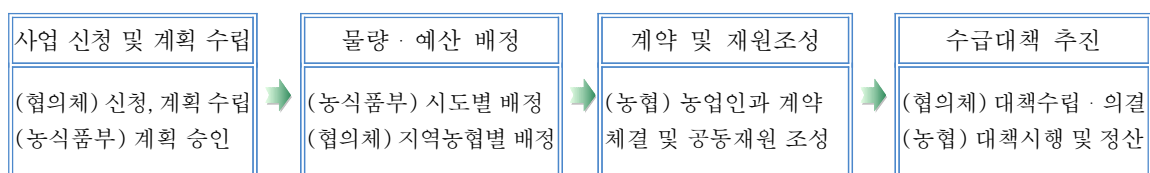
□ (주요내용) 농업인 또는 농협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평년가격 대비 하락시는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의무 사항)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생육단계 폐기), 출하정지, 출하조절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
 - (과잉시) 가입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이행,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 방지
 - (부족시) 가입물량의 50%까지 출하시기 조절,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
- (지원 사항) 공동재원*을 활용해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 지원하고, 평년 가격의 최대 80% 수준 보장

*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

** (출하前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 소요된 생산비 수준, (출하조절) 운송비·작업비

□ (추진체계) 지자체·농협·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급대책 수립·추진



1 가격차보전: 22년산 제주 조생양파

- (보전방법) 당해연도 도매시장(가락시장) 거래가격이 5년 평년가격(기준가격)의 80% 수준(보전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보전

	◀ 기준가격: 가락시장 5개년 평년가격(가장 높은 · 가장 낮은 가격 제외)
	◀ 보전기준가격: 기준가격의 80%
보전금액	◀ 거래가격: 가락시장 경락가격
	◀ 최저기준가격: 기준가격의 60%

- 보전산출방식: 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보전기준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사업비에서 보전

- (보전사례) 제주 조생양파('22. 3월 하순~5월 상순, 8,541톤/420백만원)

- '22년산 재고량 이월, 조생종 생산량 증가로 4월 상품 도매가격은 평균 611원/kg, 평균가 471원(전년비 39%↓, 평년비 32%↓)

(단위:원/kg)

순기별	시장가격(도매가격)					농가 수취가*	생산비 경영비	보전기준 가격(80%)	최저기준 가격(60%)	차액 (보전단가)
	특	상	중	하	평균					
3월 하	618	393	256	160	303	233	434	794	595	199
4월 상	841	492	289	146	359	271	309	781	586	195
5월 상	666	551	478	335	484	372		577	433	93

* 농가수취가: 도매평균가격-출하제비용(상장수수료 포함)을 제외한 금액

* 시장평균가격이 최저기준가격보다 낮더라도 보전 기준가격과 최저기준가격 차액만 보전

2 출하정지 및 산지폐기: 22년산 제주 조생양파

- (보전방법) 가격하락 시 출하대기 포전을 확정 후, 가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전 정리 및 손실보전

- 보전금액: 보전기준액(기준가격 × 농업인수취율 - 출하비용) × 출하정지 면적

- (보전사례) '22년산 조생양파('22.3.22.~4.30.) 2.3만톤 출하연기(200원/kg 선지원)하고, 제주조생양파 94ha 산지폐기* 실시

* 산지폐기(물량): 94ha(2,643톤), 지원단가: 453원/kg(9,060원/평), 사업비: 1,197백만원

3 출하장려: 22년산 강원 고랭지 배추

□ 고랭지 배추('22. 9월 상순) 위기단계 심각으로 1,468톤(165대), 248백만원 지원

* 배추 도매가격('22.8.29.~8.31.): 19,223원/10kg(상승심각)

* 배추 7~8월 평균: 14,403원

(참고) 22년산 조생양파 기준가격 및 거래가격 산출기준 <순별 산출>

□ 기준가격(평년가격): 857원/kg

(단위: 원/kg)

3월 하순	4월 상순	4월 중순	4월 하순	5월 상순
992	976	863	732	721

* 산출기준: 가락시장 등급별 물량비를 반영한 **가중평균**의 5개년 평년가격
(평년가격: 최대년, 최소년 제외한 3개년의 평균가격)

* 가락시장 등급별 물량비(양과 품목) : 특(5%), 상(35%), 중(40%), 하(20%)

예) '16.7 등급별 가격(특품 814, 상품 723, 중품 591, 하품 409)

가중평균은 $612(=814 \times 5\% + 723 \times 35\% + 591 \times 40\% + 409 \times 20\%)$

□ 보전기준가격(차액보전의 기준): 686원/kg

(단위: 원/kg)

3월 하순	4월 상순	4월 중순	4월 하순	5월 상순
794	781	690	586	577

* 산출기준: 기준가격 $\times$ 80%

* 보전기준가격은 보장가격이 아님. 평년가격과 당해연도가격과의 차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임

□ 최저기준가격: 514원/kg

(단위: 원/kg)

3월 하순	4월 상순	4월 중순	4월 하순	5월 상순
595	586	518	439	433

* 산출기준: 기준가격 $\times$ 60%

□ 시장평균가격(가락시장)

* 순별 가중평균: $[\sum\{(\text{해당순기 일자별 등급별 가격}) \times \text{등급별 물량비}\{ \text{특}(5\%), \text{상}(35\%), \text{중}(40\%), \text{하}(20\%) \}}] / (\text{해당순기 영업일수})$

[참고자료 4] ^(가칭)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사업(안)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기본 방향)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 기능을 원예농산물(노지채소+시설채소+과수)의 수급 및 생육관리 중심으로 확대 개편, 농업관측연계 중앙-지방간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사업대상) 수급 의무(자조금납부, 경작신고 등) 이행 농업인

- * 자조금 납부 확대 여건 조성을 통해 품목 농가 모두 수급안정사업 참여 유도
- * 수급안정사업 참여 농가 대상 수입안정보험 보험료 지원, 계약재배 농가는 85% 고보장상품 가입 허용 등 수입안정보험과 수급 연계 강화

□ (대상품목) '26년 원예농산물 7개* 품목 → '29년 21개 품목으로 확대

- * 채소가격안정제(마늘, 양파, 무, 배추, 대파) + 양배추, 포도

□ (사업내용) 품목 특성에 따라 선제적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재해예방, 출하조절 및 계약거래 활성화 등 중점 추진

- ❶ **재배면적 관리** : 생육단계 폐기, 사전면적조절, 추가정식, 예비묘 공급 등 지원
- ❷ **생육관리(재해예방)** : 품목 특성에 따른 비료·농약·공동방제, 관수시설 지원, 한파 및 폭염 피해 방지 등 재해예방, 토질 개선을 위한 토양살균제 등 지원
- ❸ **출하조절** : 공급과잉 또는 부족시 출하조절에 수반되는 비용 등 지원
- ❹ **계약거래활성화** : 작황부진 재해 등 수급불안 시 계약거래 이행에 따라 산지조직 손실 일부 보전

□ (추진체계) 주산지협의체(지역)↔중앙주산지협의회(정부)에서 수급 의사결정을 내리고, 수급안정사업을 통해 실행

□ (예산) '25년 채소가격안정제 211억원 → '26년 390억원(7개품목) → '29년 1,100억원(21개 품목)

* '26년 수급안정사업: 품목별 50억원×7개품목=350억원, 수급관리센터 구축(8개소): 1개소/5억원×8개소(제주를 제외한 광역지자체)=40억원

↳ 재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농협 10%, 농업인 10%

※ (참고) 수급안정사업 예상 소요액(국비) : 품목별 평균 25~30억원

○ '17~'23년 채소가격안정제에서 가격차 보전을 제외한 출하조절,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사업 집행에 품목별 연평균 2,862백만원 소요(집행실적 없는 건고추 제외)

[참고자료 5]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 (대상품목) '24년 9개 품목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 ('24) 9(+옥수수·보리)

□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

□ (보장피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가격하락 등

□ (소요예산) '24년 81억원, '25년 2,078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예산 (미지급금)	3,159	4,649	4,649	5,149	5,100 (17년 142)	5,257 (18년 108)	2,500	2,500	2,500	8,100	207,817
국고지원	4,133	3,950	17,881	5,257	5,100	4,432	2,500	2,500	2,500	—	—

□ (가입실적) '15~'23년 동안 총 15,895ha, 17,838 농가 가입

○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 저조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 ('23) 3.3

○ '23년 기준 총 7개 품목 1,233ha, 1,652 농가 가입

□ (지급실적) '15~'23년 동안 총 12,511 농가에 보험금 891억원을 지급 하였으며, 누적 손해율은 138.8%

* 연도별 손해율: ('15) 7.7% → ('17) 31.5 → ('19) 185.6 → ('21) 67.8
→ ('22) 110.0 → ('23) 150.9

* 연도별 보험금: ('15) 4억원 → ('17) 77 → ('19) 109 → ('21) 25 → ('22) 40
→ ('23) 59

○ '23년 기준 총 7개 품목 1,346 농가에 보험금 58.6억원 지급